

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8월 1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32 호

## 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‘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’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3조제4항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구성, 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, 대학,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”를 “구성·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, 대학, 관련단체 등에 의뢰(또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)하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경 영 기 획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|
| 입<br>안  | 직 위<br>성 명<br>경 영 기 획 실 장<br>이 현 동              |
| 자       | 직 위<br>성 명<br>인 사 총 무 팀 장<br>신 재 두              |
|         | 담당자 성명<br>(전 화)<br>문 원 미<br>( 3 9 0 - 7 6 4 1 ) |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<br/>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<br/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br/>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<br/>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<br/>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<br/>무원으로 퇴직한 자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|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<br/>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---. 이 경우 ‘<u>인사혁신처 국가<br/>인재데이터베이스</u>’를 활용할 수<br/><u>있다.</u>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br/>-----<br/>----- 사람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|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9조(임원후보자의 모집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시장 또는 공사 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<u>구성, 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, 대학,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</u>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노력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| <p>제9조(임원후보자의 모집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구성·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, 대학, 관련단체 등에 의뢰(또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)하여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|